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부령에 있는 경우 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교육부 소관 5개 부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29. ~ 5.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을 “성명·생년월일·주소 및”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를 “성명·생년월일·주소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성명·생년월일·주소”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성명·생년월일·주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 제1호 중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성명·생년월일·주소”로 하고, 같은 신청인 제출서류 제5호 중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제4호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생년월일” 및 “주소(전화번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삭제하고, 민간자격 변경등록 신청 접수증의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삭제하고,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접수증의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삭제하고, 등록자격 폐지신고 접수증의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삭제하고, 민간자격 [] 공인 [] 재공인 신청 접수증의 법인의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제4호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법인의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삭제하고,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 접수증의 법인의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의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삭제하고,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 접수증에서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의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삭제하고,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 접수증에서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법인의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삭제하고, 공인자격 폐지계획서 신고 접수증에서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의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삭제하고, 공인자격 폐지신고 접수증에서 대표자란의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삭제한다.

제3조(「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신청인란의 “성명(한글)”을 “성명”으로 하고, “(한자)”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란의 “성명(한글)”을 “성명”으로 하고, “(한자)”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신청인(대표자)란의 “생년월일”을 “(개인) 생년

월일,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인계자란의 “(한자)”를, 인수자란의 “(한자)”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신청인(대표자)란의 “생년월일”을 “(개인) 생년월일,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대표자란의 “(한자)”, “주소”, “전화번호”, 및 “생년월일”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인란의 “성명(한글)”을 “성명”으로 하고, “(한자)”를 삭제한다.

제4조(「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의 개정)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직인의 새긴사람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5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성명란의 “한글” 및 “한자”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성명란의 “한글” 및 “한자”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성명란의 “한글” 및 “한자”를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성명란의 “한글” 및 “한자”를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성명란의 “한글” 및 “한자”를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성명란의 “한글” 및 “한자”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 4. (생략)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생략)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할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와 -----

2. ~ 4. (현행과 같음)

5. ----- 성명 · 생년
월일 · 주소 -----

6. (현행과 같음)

[illegible]

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
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